

학교 규칙 제·개정에 따른 의견조사



학교규칙이 법규와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제개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. 학교규칙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 하시어 찬성 반대 여부 및 의견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(학교규칙 신·구조문 대비표)

소성초등학교

순	장	조항	조명	현행	개정
1	제1장	제3조	위치	제3조(위치) 본교는 전라북도 정읍시 소성면 보화리 178-6번지에 둔다.	(도로명 주소 사용) 제3조(위치) 본교 소재지는 전라북도 정읍시 소성면 보화1길 130으로 한다.
2	제4장	제12조	학교 밖에서의 수업활동	제12조(학교 밖에서의 수업활동) ① 학교장은 학교 밖에서의 수업활동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계획·추진할 수 있고 학교 밖 수업활동 기간을 출석 수업으로 처리할 수 있다. ㉠ 개별 위탁 체험학습 ㉡ 학교 간 교류학습(집단체험학습) ㉢ 효도 방문 및 가족동반 체험학습	(전라북도교육청 체험학습 지침에 따라 개정 및 신설) 제12조(체험학습) ① 학교장은 체험학습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계획·추진할 수 있고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한 범위 안에서 출석 수업으로 처리할 수 있다. ㉠ 개인 교환학습 ㉡ 단체 교환학습 ㉢ 교외체험학습 ② 체험학습을 위하여 교환학습을 의뢰 받았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승인하여야 하며, 승인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는 그 구체적인 사유를 밝혀 의뢰서 접수 후 5일 이내에 의뢰 학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③ 단체 교환학습을 위하여 놓여준 학교 잉여교실을 사용하고자 시설 사용 신청을 받았을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승인하여야 하며, 특별한 사유로 승인 불가능할 시는 그 사유를 밝혀 신청서 접수

					후 5일 이내에 신청 학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④ 기타 체험학습과 관련된 사항은 매년 초 전라북도교육청 체험학습 추진 지침에 의거하여 실시한다.
3	제4장	제9조	교육과정 운영	제9조(교육과정운영) -----교육인적 자원부장관 -----정읍교육청---	(명칭 변경) 제9조(교육과정운영) -----교육부장관 -----정읍교육지원청-----
	제4장	제10조	교과	제10조(교과) -----교육인적 자원부장관-----	(명칭 변경) -----교육부장관-----
	제4장	제13조	개별위탁 체험학습	제13조(개별 위탁 체험학습) -----	(삭제) 해당학년도 전라북도교육청 체험학습 지침을 따름
4	제4장	제14조	학교 간 교류학습	제14조(학교 간 교류학습) -----	(삭제) 해당학년도 전라북도교육청 체험학습 지침을 따름
5	제4장	제15조	효도방문 및 가족동반 체험학습	제15조(효도 방문 및 가족동반 체험학습) -----	(삭제) 해당학년도 전라북도교육청 체험학습 지침을 따름
6	제4장	제16조	교육평가	제16조(교육평가) ① 중간, 기말평가 등 연 4회 이상 전 교과평가를 실시한다. ② 전 교과의 교수·학습과정에서 형성평가와 수행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. ③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는 학년도 초에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정확히 실시 되도록 하여야 한다.	(전라북도교육청 초등학교 학업성적관리시행 지침에 따라 개정) 제 16 조 (교육평가) ① 학교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학교 교육계획에 의거하여 평가를 실시한다. ② 평가는 성적산출의 목적이 아닌 성취기준, 평가기준에 따른 성취도에 중점을 두어 평가한다. ③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소성초등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른다.
7	제4장	제17조	수업일수	제17조(수업일수) 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9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. 학교장은 초·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 제2호에 의거 정읍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	(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개정) ① ----- 초·중등교육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천재지변,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

				<p>1/10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.</p>	<p>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,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장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수업일수를 정하려면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야 한다.</p> <p>③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학년의 수업일수로 인정할 수 있다.</p>
8	제4장	제18조	<p>특수교육 및 학습부진아 지도</p>	<p>제18조(특수교육 및 학습부진아 지도)</p>	<p>(2018.2.21.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에 따름)</p> <p>④ 장애인(특수교육대상자) 차별 금지(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조1항)</p> <p>㉠ 학교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는 등 교육기회에 있어서 차별을 하지 않는다.</p> <p>㉡ 장애를 이유로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장애인의 전입을 거절하지 않는다.</p> <p>㉢ 특정 수업이나 실험·실습, 현장견학,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, 배제,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.</p> <p>⑤ 장애인(특수교육대상자) 및 보호자에 대한 차별 금지(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조2항)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를 차별하지 않는다.</p> <p>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</p> <p>㉡ 수업, 학생자치활동, 그 밖의 교내외 활동에 대한 참여 배제</p> <p>㉢ 개별화교육지원팀에의 참여 등 보호자 참여에서의 차별</p> <p>㉣ 학생 생활지도에서의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의 차별</p> <p>⑥ 통합교육(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)</p> <p>㉠ 학교장은 교육에 관한 각종 시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통합교육</p>

					<p>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㉞ 학교장은 교육과정의 조정, 보조인력의 지원, 학습보조기기의 지원, 교원연수 등을 포함한 통합교육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</p> <p>㉟ 학교장은 제2항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의 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·운영하고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·설비 및 교재·교구를 갖추어야 한다.</p> <p>㊱ 개별화교육지원팀(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)</p> <p>㊲ 매 학년의 시작일부터 2주 이내에 각각의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하되,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보호자, 특수교육교원, 일반교육교원,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 교원, 특수교육관련 서비스 담당 인력 등으로 구성한다.</p> <p>㊳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매 학기의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고, 장애특성 및 정도를 고려한 개별화교육을 실시한다.</p> <p>㊴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지원의 내용을 추가·변경 또는 종료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를 재배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검토를 거쳐 정읍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진단·평가 및 재배치를 요구한다.</p>
9	제7장	제35조	징계	※ 출석정지 기간은 <u>무단결석</u> 으로 처리(특기사항란에 사유 기재 없음)	(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명칭 수정) ※ 출석정지 기간은 <u>미인정결석</u> 으로 처리(특기사항란에 사유 기재 없음)
10	제7장	제36조	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		(신설) 제36조 (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별도 규정에 따른다.
11	제8장	제37조	학교규칙 개정절차	제36조 (학교규칙 개정절차)-----	(조항 번호 수정) 제37조 (학교규칙 개정절차)-----
학교규칙 제·개정				찬성	반대

		